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##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882 2021. 12. 30.(화)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3일

-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6대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'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'에 대한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(5년)
- O 수탁기관 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
- O 위탁방법(수탁자 선정방식): 재위탁
- O 위탁사무내용
  -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
  -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·품질·안전성 등 검사·시험 평가
  -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
  -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
  -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
  -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제5조와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 민간위탁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이었으나, 절차적 하자로 동의를 받지 않아 재위탁 시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함.
  - ※ 최초위탁: 2017.01.02. ~ 2021.12.31.(5년)/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
-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, 충청북도에서 전략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자 '17년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한 기관으로 화장품 임상시험, 인증, 평가 등 화

장품임상연구지원의 주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.

- O '17년부터 5년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600개의 기업 지원하고 및 도내와 타지역 기업 1,173곳이 센터를 이용하였고, 17년 개원 시 경영지수가 적자폭이 컸으나, '20년도 흑자로 전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였으며, 4,026건의 시험·인증추진 및 R&D 연구과제(국비 및 지방비 사업) 14건을 수행하는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타지역 기업들의 의뢰가 늘어나 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어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- 다만, 충청북도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이라는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확보 및 도내 화장품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며,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점검을 통해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 - O 「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등

###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882 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29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O 충청북도 6대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 하기 위해 설립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

O 「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을 수립 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O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
- O 추진근거
  -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제5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, 부칙 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
- O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
- O 시설현황 : 연면적 4,220.8㎡/부지 8,924㎡('17.4.11. 준공)
- O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- O 수탁기관 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
- O 위탁방법(수탁자 선정방식): 재위탁
- O 위탁사무내용
  -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
  -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、품질、안전성 등 검사、시험 평가
  -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
  -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
  -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
  -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O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없음(시설사용료 수입과 입주기관 관리비 분담으로 운영)
- O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: 붙임
-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: 붙임
-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관계법령 붙임

### 3. 관계법령 : 붙임

- O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
  - 제5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- O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  - 제4조 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  - 제5조 (의회동의 및 보고)
  - 제6조 (수탁기관의 선정)
  - 제7조 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  - 제10조 (재계약·재위탁)
  - 부칙 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

###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### I. 추진근거

- O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O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### Ⅱ. 위탁개요

- O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
- O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  - ※ (최초위탁) 2017. 1. 1. ~ 2021. 12. 31. (5년)
- O 선정방법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
- O 수탁기관 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
- O 예 산 액 : 없음(시설사용료 수입과 입주기관 관리비 분담으로 운영)
- O 위탁사무
  -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
  -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·품질·안전성 등 검사·시험 평가
  -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
  -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
  -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
  -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O 수탁기관 조직
  - 수탁기관(오송바이오진흥재단 / 운영기관)

(단위 : 명)

계	시무국장	부장	팀장	6급	7급이하	기타 (전문계약)
25/25	1/1	2/2	4/4	9/10	7/7	2/1

- ※ 현원 25명 : 전임 4명(일반3, 전문계약1), 겸직(공무원) 21명
- ⇒ 운영인력은 화장품 뷰티산업팀 5명이 전담함

### < 現,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위탁현황 >

■ 위 치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

■ 규 모: 연면적 4,220.8m²/부지 8,924m²('17.4.11. 준공)

■ 사업비: 176억원(국비 50, 도비 126) / (건축비 100, 장비비 60, 부지매입비 16)

■ 수탁기관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(운영) ※ 위탁기간 : 17.1.1. ~ 21.12.31.

■ 입주기관: 세명대학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충북테크노파크(TP)

■ 주요장비: 44개 시스템 40품목

■ 주요기능: 화장품 연구 및 인체효능·안전성 평가 등 중·소기업 지원

### Ⅲ. 추진일정

추진계획 수립		성과 평가	$\Rightarrow$	의회동의
'21. 8월		'21. 10월		'21. 11월
	7		٦	
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		계약체결 및 공증		사무 개시
'21. 12월		'21. 12월		'22. 1월

### Ⅳ.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1. 11월

○ 위·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: '21. 12월

○ 수탁사무 개시 : '22. 1월

###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

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

### □ 추진근거

O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, 제4조의2

### □ 민간위탁 현황

O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

O 수탁기관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

O 위탁방법: 재위탁

○ 시설규모 : 연면적 4,220.8㎡/부지 8,924㎡('17.4.11. 준공)

O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
※ (최초위탁) '17.01.2~'21.12.31. (5년)

O 예 산 액 : 없음(시설사용료 수입과 입주기관 시설 관리비 분담으로 운영)

### -----〈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주요기능〉

-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
-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・품질・안전성 등 검사・시험 평가
-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
-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
-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

### □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

검토항목	검토의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가능성	-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해 화장품 임상시험, 인증, 평가 등을 연구 지원하는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 - 화장품산업관련 연구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- 화장품임상연구 분야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 되며 전문인력을 상시 비치할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을 보장 - 직영할 경우,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	
③ 경제적 효율성	-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의 수 입(사용료 수익)이 발생하여, 별다른 위탁료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함	
<ul><li>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</li></ul>	- 화장품임상 및 인증 평가 업무는 민간의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기술서비스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-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-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- 대부분의 회장품임상연구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, 지방의 관련 기업들이 임상연구의 어려움이 존재 -지자체에서 민간의 전문 분야인 회장품임상연구센터를 위 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기업들에 서비스를 공급	

### □ 검토결과 : 적정

- O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,
- O 충청북도 전략육성산업인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해 '17년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도가 건립한 기관임
- 수도권 위주의 화장품임상연구를 지자체에서 건립하여 민간의 전문성 아래 위탁사무를 추진하여 지방 중소기업 지원 및 산 업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
- 지난 5년간 총 1,173개 화장품 기업을 지원했으며, 19년 이후부 터는 타지역 기업들의 의뢰가 늘어나 센터가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음
- ⇒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,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<u>민간위탁으로</u>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### □ 향후계획

O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1.11.

O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21.12.

O 수탁사무 개시 : '22.01.

### 불입①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

### 평가 개요

- O 근 거
  -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(성과평가)

O 기 간: 2021. 9. 27. ~ 9. 29.(3일간)

○ 방 법: 서면평가 ※ 코로나19 확산 차단

○ 평가항목: 4개 분야 10개 항목

분 야	평 가 항 목			
	1. 도내 화장품 기업 지원 활성화			
공공성평가	2. 센터 이용 활성화			
	3. 연구시설 타지역 경쟁력 확보			
	1. 수입-지출의 건전성			
경영수지평가	2. 향후 경영수지 개선 여력			
	3. 원활한 시설 관리 능력			
	1. 시험·인증 수행 실적			
사업수행 능력	2. R&D 연구과제 수행 능력			
	3. 사업수행인력 확보 및 전문성			
지역사회기여 1. 지역 산업, 일자리 등 기여정도				

### O 평가등급(항목별 10점)

등급	우수	양호	보통	미흡	매우미흡
점수	10점이하 9점이상	9점미만 8점이상	8점미만 6점이상	6점미만 4점이상	4점미만

## Ⅱ 평가 결과

구분	평 가 항 목	등급	배점 평균	내 용
전체 평가 점수		우수	9.2	
	1. 도내 화장품 기업 지원 활성화	우수	9.3	-17년·20년 동안 도내 600개 기업 지원 -기업지원 수 연평균 35.4% 증가
공공 성평 가	2. 센터 이용 활성화	우수	9.6	-총 1,173개 도내, 타지역 기업이 이용 -기초피부연구소, 회장품연구회 등 센터 활성화 자구노력
	3. 연구시설 타지역 경쟁력 확보	우수	9.6	-19년 이후부터 타지역 기업의 의 뢰가 도내 기업 이용보다 늘어날 정도로 지역경쟁력 갖춰짐
경영 수지 평가	1. 수입-지출의 건전성	양호	8.7	-17년 센터 개원으로 초기 경영지 수가 적자폭이 컸으나, 20년부터 흑자 전환 이루어짐
	2. 향후 경영수지 개선 여력	우수	9.8	-충북연구원 용역결과, 22년~26년간 순익이 4.8억원 증가가 추정 -향후 지속적으로 순익 증가 예상
	3. 원활한 시설 관리 능력	양호	8.9	-소방안전관리, 건물관리, 시설물 수리 등 연간 3천만원 예산 수립 -장바수라비를 위한 2천만원 예산 수립
	1. 시험·인증 수행 실적	우수	9.3	-총 4,026건의 시험,인증을 추진 -5년간 6,738백만원의 목표수입에 8,019백만원 달성(119.1%)
사 수 능	2. R&D 연구과제 수행 능력	양호	8.9	-국비 및 지방비 사업 14건, 총사 업비 3,183백만원 사업 추진
	3. 사업수행인력 확보 및 전문성	양호	8.4	-재단 전담인력 5명(화장품산업팀) -화장품 인증 및 임상 연구 전문인 3개기관(세명대,KTR,충북TP) 컨소시엄 연구인력 배치(28명)
지역 사회 기여	1. 지역 산업, 일자리 등 기여정도	우수	10.0	-저렴한 임상비용 도내기업에 제공 -타지역 기업 이용으로 지역경제 기여 -충북도민 대상으로 피험비 지급으로 고용 활성화(약2만5천명)

### 붙임② 관련규정 발췌

#### 〈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〉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「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재단법인 오 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· 단체 등에 연구지원센터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센터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 "라 한다)는 화장품 신소재·제품 연구 개발, 시험·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- 1.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화장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), 협회, 기업 또는 법인(이하 "연구기 관등"이라 한다)
- 2. 연구기관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 ·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출자 · 출연기관 및 기업 등
-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### 〈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〉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- 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〈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〉

- 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0조(재계약·재위탁)①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하는 경우,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#### 부칙

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5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